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정이유**

○ 평생학습관 교육 강좌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수강생 정원 기준을 완화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을 추가하는 등 수강신청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약칭 정의를 위한 자구 수정(안 제3조제1항)

○ 수강생의 정원 관련 사항 수정(안 제14조제1항)

- 수강생 정원 기준을 ‘10명 이상 60명 이하’로 변경

○ 별지 서식 수정

- 성별 구분란 신설(안 별지 제1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사항을 표 형식으로 변경하고, 동의 거부 권리 안내를 강조 표시(안 별지 제3호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을 추가(안 별지 제3호서식)

□ **개정규칙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예정

○ 입법예고 기간: 2026. 11. 13. ~ 2026. 12. 3.(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26. 12월 중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규칙

○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규칙 제 호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20명”을 “10명”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평생교육과 ☏940-4441
입안자	평생교육과장	김 지 숙
	평생학습관 운영팀장	최 미 영
	담 당 자	양 지 호

[별지 제1호서식]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사용자	성명(단체)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사용구분	□ 사용 신청		□ 변경 신청	
행 사 명				
행사내용				
참여인원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용시설	기본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부대시설	
사 용 료				
변경사유	※ 변경의 경우에 기재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허가서				
사 용 자	성 명		주 소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사 용 료	납부 금 원			

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구 분	수 강 신 청 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신청과목		전화번호	()		
주 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파주시 평생학습관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교육수강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 이용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수강생 본인 확인, 수강료 환불 요구 시 개인 식별, 수강 관련 정보제공, 교육프로그램 소개 및 안내 등 서비스 제공, 회원 관리, 수료증 발급 등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선택) 주차장 이용 시 주차증 발급을 위한 차량번호, 면제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증명, 기초수급증명, 한부모가족증명사항 등
보유·이용기간	이용기간: 수강기간 (가입일 ~ 해지일) 또는 분쟁처리 기간 보유기간: 3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파주시 평생학습관 수강신청 및 수강료 면제·환불 등 파주시 평생학습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귀 학습관에서 실시하는 위 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등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20조에 따른 수강료 면제 대상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즉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수강생의 정원) ① 평생학습관 각 교육 과정의 정원은 20명 이상 60명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14조(수강생의 정원) ①---------- 10명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가공·이용·제공·보존·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규칙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3장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평생학습관의 명칭은 파주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파주시 금정3길 40에 둔다.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즉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고 신청서 하단의 사용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일이 공휴일 및 일요일인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위탁운영)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준수 사항) ① 수탁자는 시장으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시설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비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6조(수강신청)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정규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기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서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납부 등)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수강료 및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5, 2022.9.3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평생교육기관·단체·비영리법인에서 평생학습을 위하여 강의실을 사용하는 경우

3.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학습동아리가 강의실을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20조에 따른 수강료 및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제한 또는 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 승낙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 목적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물품판매·계약행위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6. 공익목적 외에 각종 토론회·회의·집회 등 시민교육이나 문화진흥과 관련 없는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제10조(양도 및 전대 금지) 평생학습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허가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1조(소지품 반입 제한)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수강생의 일부 소지품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강사의 위촉) ① 평생학습관 강사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응모자가 없는 강좌

2. 특별강좌

3.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평생학습관 정규강좌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교육기간 중 신규로 위촉되는 강사의 위촉 기간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되는 강사는 별도의 위촉기간이 없이 강의를 배정할 수 있다.

제13조(강사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해촉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강하는 등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2. 수강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영리행위를 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의 교육 운영상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정원 미달로 폐강이 불가피할 때

6. 본인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4조(수강생의 정원) ① 평생학습관 각 교육 과정의 정원은 20명 이상 60명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원을 증감 할 수 있다.

② 수강생이 모집 인원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할 수 있

다.

제15조(손해배상 등) 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물을 잃어버린 자는 이를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하며, 원상복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자가 사용상의 부주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6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현행 별지 제2호 및 제4호서식 생략)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사용자	성명(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용구분		□ 사용 신청	□ 변경 신청	
행 사 명				
행사내용				
참여인원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용시설	기본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부대시설	
사 용 료				
변경사유		※ 변경의 경우에 기재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허가서

사 용 자	성 명		주 소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사 용 료	납부 금 원			

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구 분	수 강 신 청 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신청과목		전화번호	()		
수강기수	20 년 기수		(H・P)		
주 소					
첨부서류 감면대상자에 한함	1. 신분증 2. 수강료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파주시 평생학습관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교육수강과 관련된 서비스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 이용합니다.

1. 수집·이용 목적 : 수강생 본인 확인, 수강료 환불 요구 시 개인 식별, 수강관련 정보제공, 교육프로그램 소개 및 안내 등 서비스 제공, 회원 관리, 수료증 발급 등
2. 수집 항목
 가. 필수정보: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전화번호
 나. 선택정보: 면제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증명, 기초수급증명, 한부모가족증명 사항, 주차장 이용 시 주차증 발급을 위한 차량번호
3. 이용 및 보유기간
 가. 이용기간: 수강기간 (가입일 ~ 해지일) 또는 분쟁처리 기간
 나. 보유기간: 3년

※ 수집된 자료는 보유목적 이외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파주시 평생학습관 수강신청이 되지 않으며, 파주시 평생학습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모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귀 학습관에서 실시하는 위 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구 분	교 육 신 청 접 수 증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수강과목		전화번호	()		
주 소					

위와 같이 교육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파 주 시 장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table>
<tr><td>관리번호</td><td colspan="4">2026A경기파주056</td></tr>
<tr><td>정 책 명</td><td colspan="4">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td></tr>
<tr><td rowspan="3">소관부서</td><td>기관명</td><td colspan="3">경기도 파주시</td></tr>
<tr><td>부서명</td><td colspan="3">평생교육과</td></tr>
<tr><td>담당자명</td><td>양지호</td><td>전화번호</td><td>031-940-4441</td></tr>
<tr><td>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td><td colspan="4">2026년 10월 23일</td></tr>
<tr><td>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평생교육과)</td><td colspan="4">- 규칙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규칙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td></tr>
<tr><td>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td><td colspan="4">□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별지 제1호서식은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④ 성별 통계(점검포인트 : 제·개정 법령과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와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table>
<tr><th>구분</th><th>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th><th>개선안
(법령 수정안)</th><th>검토사유</th></tr>
<tr><td>1</td><td><별지 제1호서식>
사용자 정보</td><td><별지 제1호서식>
사용자 정보 : 성별 수집</td><td>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면서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정책대상자인 시민의 성별 관련 현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성별을 수집하도록 개선이 권고되고 있음. 따라서 별지 제1호서식에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칸을 마련하기 바람</td></tr>
</table></td></tr>
<tr><td>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td><td colspan="4">2026년 11월 3일까지</td></tr>
</table>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평생교육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6A경기파주056			
정 책 명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평생교육과		
	담당자명	양지호	전화번호	031-940-4441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별지 제1호서식에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칸을 마련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별지 제1호서식에 성별 확인란 신설

2026년 10월 29일

평생교육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파 주 시

수신 평생교육과장
(경유)
제목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 평생교육과-10585(2026. 10. 23.)와 관련됩니다.
2. 「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제9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부패영향평가 결과

관리번호	주관부서	자치법규명	평가결과
2026-57	평생교육과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원안동의

붙임 1. 결과통보서 각 1부.
2. 시행규칙 개정안 각 1부. 끝.

감 사 관

주무관	윤수진	감시2팀장	대결 2026. 10. 25. 이선	감사관	전결

협조자
시행 감사관-12830 (2026. 10. 25.) 접수 평생교육과-10634 (2026. 10. 26.)
우 10930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1, 감사관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5840 팩스번호 031-940-4089 / yoon55@korea.kr / 비공개(5)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6-57		
자치법규명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윤수진
주관부서	평생교육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양지호
평가결과 통지일	2026. 10. 23.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		-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파 주 시

수신 평생교육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회신[「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1. 평생교육과-10580(2026. 10. 23.)호와 관련합니다.
2.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 규제영향분석 심사결과

소관부서	자치법규명	심사의견
평생교육과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제 해당사항 없음

붙임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서 1부. 끝.

예 산 법 무 과 장

주무관 권성원 규제개혁통계팀장 김선정 예산법무과장 2026. 10. 23. 이재면
협조자
시행 예산법무과-19560 (2026. 10. 23.) 접수 평생교육과-10603 (2026. 10. 23.)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 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059 / ksw8732@korea.kr / 비공개(5)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평생교육과
	담 당	팀장 최미영 담당자 양지호
3. 관련법령 등	○「전자정부법」 제36조	
4. 주요골자	○ 약칭 정의를 위한 자구 수정(안 제3조제1항) ○ 수강생의 정원 관련 사항 수정(안 제14조제1항) - 수강생 정원 기준을 '10명 이상 60명 이하'로 변경 ○ 별지 서식 수정(안 별지 제3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사항을 표 형식으로 변경하고, 동의 거부 권리 안내를 강조 표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을 추가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은 평생학습관 교육 강좌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수강생 정원 기준을 완화하고 수강신청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	